

# 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 731-6348 / 전송 733-9535-6

문서번호 시설 30312- 929  
시행일자 1992.10.  
(경유) 제 1안  
수신 내부결재  
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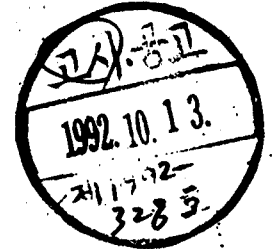
취급		시 장
보존		[Handwritten Signature]
부 시 장	전결	
도시계획국장	[Handwritten Initials]	법무담당관 [Handwritten Initials]
시설계획과장	[Handwritten Initials]	합조통계관 도시계획과장등
기안	시설계획1계장 [Handwritten Initials]	합조

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

1. 강서 도정 30310-839호(92. 5.11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강서농수산물직판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강서구 외발산동 205-5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(생산녹지, 자연녹지, 준주거지역),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제56회 우리시 임시회(92. 9. 5)와 제6차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(92. 9.17)에서 가결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합니다.

첨부 고시문 및 관련도서 1부. 끝.



# 서울특별시

(제 2안)

수신 건설부 장관  
참조 도시계획과장

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보고

1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(생산녹지, 자연녹지, 준주거지역),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.

첨부 고시문 및 도면 사본 각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(제 3안)

수신 총무처 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계제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계제 의뢰합니다.

가. 계제 구분 : 고시

나. 계제 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시행령 제8조

라. 계제 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4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통보

1. 강서 도정 30310-839호(92. 5.11)와 관련임.

2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(생산녹지, 자연녹지, 준주거지역),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토록하고, 강서구청장은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, 본 시장 건립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여된 조건대로 시장부지 내 일부를 녹지로 조성토록 조치하기 바람.(도면 참고)

첨부 고시문 및 도면(녹지 조성 도면 포함) 사본 각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수신처 도시계획과장, 강서구청장(도시정비과장)

(제5안)

수신 농축과장

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홍보

1. 농축 27030-1570호(92. 8.16)와 강서 도정 30310-839호(92. 5.11)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(생산녹지, 자연녹지, 준주거지역),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, 본 시장 건립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여된 조건대로 시장부지 내 일부를 녹지로 조성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(도면 참고)

첨부 고시문 및 도면(녹지 조성 도면 포함) 사본 각 1부. 끝.

## 시 설 계 획 과 장

(제6안)

수신 도로계획과장

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홍보

1. 강서 도정 30310-839호(92. 5.11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(생산녹지, 자연녹지, 준주거지역),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, 본 시장 진출입로인 남부순환로 - 양천길 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 및 도면 사본 각 1부. 끝.



## 시 설 계 획 과 장

고 시

과장	100-101	계	21
담당자	법기	법	판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2-326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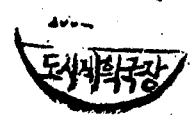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(생산녹지, 자연녹지, 준주거지역),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규정에 의거 다음 고시내용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10. />

서울특별시 장



1. 도시계획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비 고
	기 정	증 감	변 경	
계	665,984,000	-	665,984,000	강서구 의발산동 205-5일대 시장 결정부지 용도지역 변경 (생산, 자연녹지지역->준주거지역)
일반주거지역	292,120,413	-	292,120,413	
준주거 지역	4,022,484	증 29,156	4,051,640	
전용주거지역	5,001,159	-	5,001,159	
상업 지역	21,473,948	-	21,473,948	
준공업 지역	28,076,533	-	28,076,533	
자연녹지지역	310,582,315	감 5,243	<del>310,587,558</del> 310,582,072	
생산녹지지역	3,707,148	감 29,700	<del>3,736,848</del> 3,680,231	

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결정	시장	강서구 외발산동 205-5일대	29,156	강서농수산물직판장

2. 관계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강서구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